

## 전자어음거래약관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(안)	비 고
<p>제1조(목적)~제10조(전자어음에 의한 거래) (생략)</p> <p>제10조의2(전자어음 이용의무)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<b>10억원</b>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.</p> <p>제11조(전자어음의 지급과 지급위탁취소)~제44조(재판 관할 및 준거법)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 설)</p> <p>&lt;붙임&gt; 전자어음 이용 신청서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~제10조(전자어음에 의한 거래) (좌동)</p> <p>제10조의2(전자어음 이용의무)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<b>5억원</b>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.</p> <p>제11조(전자어음의 지급과 지급위탁취소)~제44조(재판 관할 및 준거법) (좌동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부 칙 2&gt;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이 약관은 2022. 5. 9.부터 개정시행한다.</u></p> <p>&lt;붙임&gt; 전자어음 이용 신청서 (좌동)</p>	<p>- 전자어음 발행의무 대상자 확대 (전자어음법 시행령개정)</p> <p>- 부칙신설</p>